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2. 1.

서울특별시

1. 공모개요

사업명 : 2023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사업기간: '23. 3월(협약 체결일) ~ 2023. 6월말

※ 향후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집수리 대상가구 방문·상담(시공범위 등)·견적서 작성·집수리 시행

집수리
공종

단열 창호(가림막) 도배 장판 도어 방수 처마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신규 안전시설(차수판·침수·가스·화재경보기·개폐형방법창 등) 환풍기

○ 시공 하자발생 시 A/S 실시(보증기간 1년) 및 기타 민원대응 등 사후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수리관리시스템에 집행과정 등록 및 보조금 정산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가구

선정규모: 10개 업체

□ 사업방식: 집수리 물량배정 및 사업비 교부 후 집수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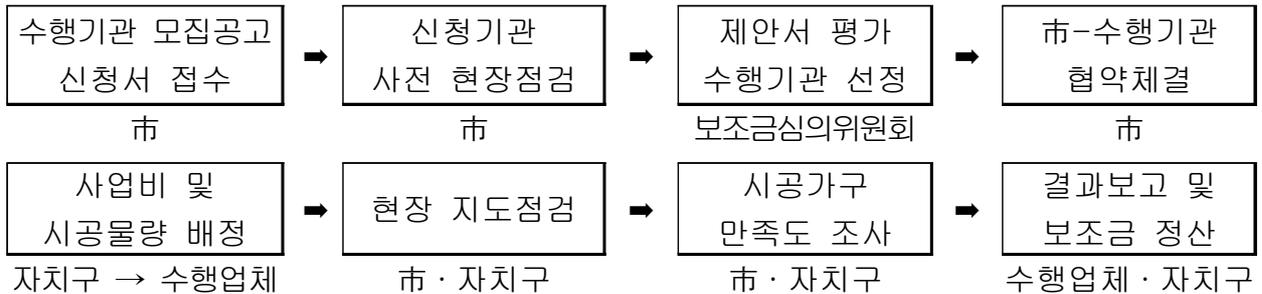
□ 사업예산: 1,080백만원(산출내역: 180만원 × 600가구)

○ 보조사업자별 사업비: 180만원 × 60가구 내외

※ 부득이하게 가구당 180만원을 초과하는 시공비용은 보조사업자 자부담에서 충당

※ 향후 사업비가 증액(20억원)될 경우, 추가물량(업체당 약 120가구)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절차



2. 신청자격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건축' 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최근 3년 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3억원 이상의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할 것
- 보조사업 제재* 또는 관련법령상 행정처분 여부, 사회적인 물의 또는 평판 조회 결과 심각한 결격사유 또는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수급) 및 관련 법령을 준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서류접수

- 접수 일: 2023. 2. 15.(수) ~ 17.(금) 10:00~17:0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처: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6층 주거안심지원반 주거안심사업팀

4. 제출서류

1)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

- ① 사업 참가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또는 단체)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⑤ 최근3년 관공서·공공단체가 발주한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계약서·협약서·실적증명서 등)
- ⑥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합의각서

2) 정량·정성평가 관련 서류

- ⑦ 법인(또는 단체)일반 현황
- ⑧ 경영실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년)
- ⑨ 사업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 체계도
- ⑩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개인별 세부사항(경력·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⑪ 사용자재 현황(도배, 장판 자재 2종 이상 구비내역 포함)
- ⑫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⑬ 사업계획서

- 사업비 및 자부담은 업체당 보조금 108백만원(배정물량 60가구) 기준으로 작성
 - ※ 실제 배정되는 물량 및 보조금은 권역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은 ‘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

3) 제출방법

- 사업참가자격(①~⑥) 각 1부 편철 제출
- 평가 관련서류(⑦~⑬) 각 12부 제본하여 제출(책자형태. 스프링 금지)
- 모든 서류는 PDF 및 한글(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필수)
 - ※ 이메일 주소 : skytaek2379@seoul.go.kr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 ▶ (1차) 정량평가: 제출서류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고득점 상위 20개 업체 선정**
- ▶ (2차) 정성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일정은 향후 개별통보

※ **1차 정량평가 통과된 업체에 한해 2차 정성평가 실시함**

○ 선정방법: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상위 10개업체 선정

○ 심사기준

- 정량평가(30점): 재정건정성(10), 인력전문성(10), 사업수행실적(10),
- 정성평가(70점): 사업이해도(15), 실현가능성(15), 집수리 시공 및 사후 관리(15), 예산적정성(15), 사업수행의지 및 태도(10)
- 가 산 점(20점): 신규 참가 업체(10), 자부담 10% 이상(10)

○ 결과발표

- (1차) 2월 4째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및 대면심사 일정 안내
- (2차) 3월 3째주, 시 홈페이지 공고

○ 협약체결: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6. 기타사항

- 서울시 추진 타 집수리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사업내용에 적시된 모든 집수리 공종에 대해 전부 시공 가능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협약체결 후 진행되는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접수는 지정 일시 내에만 가능하며, 응모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공모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서류 탈락자 유선 통보)
- 사업비를 실제 소요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이기택 주무관 ☎2133-9587

붙 임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1~8) 각 1부.

2023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보조사업 참여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주 소			
설립일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FAX		E-mail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 붙임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 표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서약서 <서식2>
 2. 법인(단체) 일반현황 <서식3>
 3. 경영실태(최근 3년, 증빙서류 포함) <서식4>
 4. 참여인력 현황 <서식5>
 5. 관련 사업실적(최근 3년) 및 자원유치 실적<서식6>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7>
 7. 사용자재 현황 <서식8>
 8. 사업계획서 <서식9>

법 인(단 체)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일		직원수	명(사업전담 00명)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홈페이지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연 혁				
주요실적	- - - - - -			

경 영 실 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매 출 액	○○ 부문			
	계			
자 기 자 본 비 율 (자기자본/총자산)	%	%	%	%
자기자본 순이익율 (순이익/자기자본)	%	%	%	%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부 채 비 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참 여 인 력 현 황

(자원봉사자 제외)

1.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자격증
				00년 00개월	

- 구분란에는 책임자, 실무자, 보조원(회계/행정) 등으로 구분 기재

2. 참여인력 세부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전 공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 급 기 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소 속	사 업 내 용	담 당 업 무	참 여 기 간		

※ 상시인력에 대하여, 집수리사업 관련 실적 위주로 기재하며 자격증빙서류 첨부

※ 관공서·공공기관 발주사업 외 작성금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연도	사업기간	사업명	발주처	집행액(천원)	주요내용 및 실적
2022	계				○ 사업내용: ○ 공사실적:
2021	계				
2020	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사전분담비율은 ○○○회사(00%), ○○○회사(00%)로 하며, 보조사업 시행 후 실제분담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한다

④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2023년 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

연번	공 종	표준자재	표준규격	단위	단가기준(원)		비 고
					재료비	노무비	
1	도배	종이벽지	벽면	m ²	2,133	9,951	
			천장	m ²	2,133	13,079	
		타일벽지	벽면	m ²	4,023	9,951	
			천장	m ²	4,023	13,079	
2	장판	비닐시트	2.0T	m ²	17,124	7,504	
3	단열	스티로폴 50T	접착제 붙임	m ²	6,832	13,086	
		방수석고판 9.5T	접착제 붙임	m ²	4,978	12,048	
		결로방지 복합단열재13T	접착제 붙임	m ²	8,414	15,335	
		결로방지 복합단열재23T	접착제 붙임	m ²	16,333	15,335	
		결로방지 복합단열재33T	접착제 붙임	m ²	24,519	15,335	
4	도어	방문PVC도어	문+문짝	개	235,240	129,708	
			문짝	개	125,300	47,518	
		대문, 방화문 분체도장	문+문짝	개	520,705	148,026	
			문짝	개	399,373	103,617	
5	방수	우레탄	노출 3mm	m ²	24,489	25,727	
		쉬 트	바닥 2.5mm	m ²	30,793	28,991	
6	처마	썬라이트	FRP 중골파형 (1.2T)	m ²	9,256	31,427	
7	창호	PVC창문	단창	m ²	78,040	56,926	재료비별도
		PVC창문	이중창	m ²	153,570	67,096	재료비별도
		방충망	300mm 이하	m ²	36,500		
		방범창	-	m ²	201,000	24,850	
		유리창	5mm	m ²	18,911	21,562	

연번	공 종	표준자재	표준규격	단위	단가기준(원)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가림막 설치	1800*1000	EA	96,167	314,650	
8	싱크대 w:1200	렌지후드	슬립형	SET	50,000	43,897	
		가스대	상판포함 600× 550×850	SET	132,897		
		하부장	스텐판, 3단사립포함 1200× 550×850	SET	386,859		
		상부장	렌지후드제외 1200× 300×790	SET	185,019		
		싱크수전	벽붙이 스프레이	SET	75,305		
9	위생기구	세면대	트랩, 폼업 포함	개	121,000	88,709	
		세면기용 수전	싱글레버	개	107,000	45,563	
		양변기	대형	개	234,000	240,730	
		바닥배수구 교체	150×150	개	56,723	61,254	
10	천장보수	목재틀 석고보드마감	각재.9.5T 석고보드	m ²	2,164	19,211	
		목재틀 리빙보드마감	각재, 리빙우드	m ²	6,261	16,224	
11	타일작업	자기질타일	200*200 이상	m ²	21,178	73,878	
12	도장작업	ks2금, 백색	2회칠, 벽체 (붓칠)	m ²	698	6,436	
13	전기작업	등기구 교체	FL32W×1 직부	EA	3,000	34,977	
14	제습기	제습기 설치	10L	EA	96,620	13,658	
15	곰팡이 제거	곰팡이 제거	가구당 재료비 30,000, 노무비 80,000				

연번	공 종	표준자재	표준규격	단위	단가기준(원)		비 고
					재료비	노무비	
16	안전시설	화재경보기 설치 2SET	리튬전지 DC3V 1500mah	EA	60,000 (30,000)	48,546 (24,273)	
		침수경보기	LEAKALERT	EA	120,000	48,546	
		가스누출경보기	NR-112	EA	48,000	48,546	
		소화기	분말3.3KG (국산) 및 받침대	EA	35,000	13,658	국산품 구입
		차수판	맞춤제작	m ²	370,000	314,650	(1500*400) 제작 기준
17	환풍기	환풍기	DWV-25 DRC	EA	9,800	63,145	

자재구비내역

도배지 종류(2종 이상)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자재 단가 : ()원

자재 단가 : ()원

장판 종류(2종 이상)

사진 첨부

사진 첨부

자재 단가 : ()원

자재 단가 : ()원

※ 2017년도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대상가구가 자재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는 도배/장판에 대하여 자재를 2종 이상 구비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적시된 정성평가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사업개요 (※폰트 변경 금지, 반드시 1page로 작성)

사업명	2023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사업가능 지역	가능 자치구 기재	사업참여인력	명
사업가능 물량	연간 가구 (1일 기준 가구)		
사업 내용	사업개요	- - -	
	추진목적	- 사업 신청사유 및 추진 목적 - - -	
	성과목표	- 사업 추진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 -	
예산 계획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100%)	천원 (%)	천원 (%)
세부 집행내역	노무비	재료비	기타경비
	천원	천원	천원

□ 추진계획

○ 세부내용

1) '집수리' 사업현황

※ 글씨크기 13~14pt로 작성

※ 타 유사사업과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희망의 집수리사업' 분석

2) 중점 추진 사항

※ (1)을 바탕으로 자사만의 강점, 사업 추진 시 중점사항 및 사유 등에 대하여 기술

※ 전담인력, 외부자원, 파트너십 등 활용한 17개 공종 시공가능한 전문인력 운영계획 포함

3) 기대효과

※ (1), (2)를 토대로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

4) 분기별 추진계획

기 간	시공물량	추진내용/방안	참가인원	소요시간
'23.4~6				일 00시간 월 00시간
'23.7~9				
'23.10~11				

※ 추진방안 : 전담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전략

○ 사업비 구성(안)

1) 총사업비 : 천원 (100%)

- 보조금 : 108,000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사업비 및 자부담은 업체당 보조금 108백만원(배정물량 60가구) 기준으로 작성

※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은 '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

※ 단체 경상비 제외, 신청한 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예산만 편성

2) 비목별 산출내역 ※ 일반관리비·기업이윤은 지급하지 않음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원)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기타경비				

※ 인건비는 시공인력에 한하여 산출. 경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상근직원 인건비 제외